

대신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대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초하여 기독교 경전 및 기타 이에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역자의 양성과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제) ①본 대학교에 대학,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을 둔다.

②대학 및 대학원에는 학부 또는 학과를 둘 수 있으며, 학부에는 20이상의 전공분야를 둘 수 있다.

③대학원 학칙은 따로 정하며, 관리는 일반대학원에서 한다.

제3조 (학부(과) 및 정원) ①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부(과)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정원 외 입학 정원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설치한 학부(과)에 관한 폐과 및 학생모집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 폐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0. 7. 1>

③학부(과) 및 전공 폐지에 관한 기준은 교무위원의 심의와 최종 의결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2010. 7. 1>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 (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5조 (재학연한) ①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학 또는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 (학년 및 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기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1.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을 1주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수업은 주, 야간 정규수업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절수업, 방송통신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주말수업, 집중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9.1)

제8조 (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개교기념일(4월 12일)<개정 2010. 7. 1>
3.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②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총장이 정한다.

③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

제9조 (입학시기)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 및 학습교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이수한 자

제11조 (편입학) ①본 대학교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3학년 학사편입학 자격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삭제2014.9.1.)

제12조 (재입학) ①재입학은 제적하였던 학부, 또는 학과(전공)로 하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모집단위 또는 전공에 재입학을 허가 한다.

②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③재입학은 전 재학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

④제적사유가 학사경고, 유급으로 인한 제적자는 그 횟수를 재입학 이후 발생분과 통산 합산하지 않으며,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 한다.

제13조 (지원서류) 본 대학교에 입학할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 소정의 입학원서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증명서
3.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4. 기타 지정한 서류

제14조 (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 (편입학 전형) ①정원 내 편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정원 외 편입학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이상으로 구성하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 1(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5.4.1.)

제17조 (입학허가 및 절차) ①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등록과 지시한 제반절차를 정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입학 시 제출한 서류 및 기타 부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④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보호자) 보호자는 학부형 또는 기타인 으로서 학생의 학비 및 기타 일체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자라야한다

제 5 장 전 과

제19조 (전과) ①전과는 재학기간 중 2학년 초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②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③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절차) ①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해당학과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이수과목) ①전과한 자는 해당학과의 영역별 전공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회 음악학과에 전과한 자는 전공필수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전과한 자의 기 득 학점 중 당해 학과 과목과 유사 공통 되는 과목은 인정 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2조 (휴학) ①질병, 병역의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17.1.1.)

②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 한다. 다만, 병역의무 및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개정2017.1.1.)

③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휴학연장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그 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기 위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다.(신설 2017.1.1.)

제23조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24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보호자 동의서 첨부)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1.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받은 자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 질병 기타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8. 기타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7 장 교과와 이수

제26조 (교과목 구분) 본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필수와 선택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제27조 (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및 기타 학교가 정하는 교과목의 강의시간은 총장이 따로 한다.

제28조 (교양과목)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2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외국어 및 기타영역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삭제2014.9.1.)

제30조 (전공 및 일반선택과목) ① 전공과목의 최소전공인정학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6.6.1.)

제30조의2(복수전공) ① 학생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6.6.1.)

②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6.6.1.)

제30조의3(부전공) ① 학생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신설2016.6.1.)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6.6.1.)

제31조 (교육과정편성)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학과의 교수회의 의결과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수강학점) 매학기 취득기준 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최대 신청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단, 2012학번까지는 매학기 취득기준 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최대 신청학점은 22학점으로 한다.)
(개정2013.3.1, 2014.9.1)

제33조 (수업시간표) ①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강신청자가 일정 수 이하인 교과목은 폐강하고 타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수강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일단 수강을 허락 받은 교과목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 (편입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의 2(학점인정) 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7.1.1.)

②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7.1.1.)

제37조 (타 대학 학점인정) 재학생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군복무 중 학점인정) ①본 대학교 재학생이 병역의무에 의한 군복무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학점 인정은 학기 당 3학점 이내로 하며 최대 12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제39조 (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3.1.,2014.9.1.)

수료인정학년	수료인정 학점	
	2012학번까지	2013학번부터
제1학년	36학점이상	33학점이상
제2학년	72학점이상	65학점이상
제3학년	108학점이상	98학점이상
제4학년	140학점이상	130학점이상

제 8 장 시험과 성적

제40조 (시험) ①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시험은 필답에 의하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구술, 과제물 등에 의할 수 있다.

③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시는 소속학과 학과장 허락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7.1.1.)

④삭제(개정2014.9.1.)

제40조의 2(출결) ①당해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신설 2017.1.1.)

②직계가족 사망, 졸업예정자(4학년 2학기) 취업 등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학생출결관리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1.1.)

③②항에 의거 출결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성적 산출은 담당교수의 재량(레포트, 추가시험, 주말·야간 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1.)

제41조 (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출석평가가 점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1.1.)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 급 이상 및 P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 교과목은 P(합격), NP(불합격)로 표시하고, 평점으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등 급	평 점	배 점
A+	4.5	95 -100
A°	4.0	90 - 94
B+	3.5	85 - 89
B°	3.0	80 - 84
C+	2.5	75 - 79
C°	2.0	70 - 74
D+	1.5	65 - 69
D°	1.0	60 - 64
F	0	0 - 59

P	PASS	합격
NP	NONPASS	불합격

③낙제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④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신청학점에 평점을 곱한 합계를 총신청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42조 (학사경고)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1.5미만인 자 또는 필수 3과목 이상 F인 자에 대하여 학사 경고 하고, 통산 3회 학사경고 자는 제적한다.

제43조 (유급) ①성적이 부진하거나 학업성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 (예배학점) 예배학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46조 (학점의 취소) ①인정된 성적이라도 부정행위 또는 과오로 취득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졸업생으로서 제1항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 (학점 이수인정) ①재입학자는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며, 소정의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②편입학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 인정하고 해당학과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제48조 (공개강좌) ①본 대학교에 교양 또는 전공학문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③공개강좌에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수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 장 졸업과 학위

제49조 (졸업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단, 2012학번까지는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2013.3.1.,2014.9.1)

②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다음 학기에 이를 이수한 경우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0조 (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학과에 대하여는 실형·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졸업실기연주의 경우 공고 후 공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 (졸업·학위) ①졸업을 하기 위하여는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후 각 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의 평균평점이 2.00이상이어야 하며 졸업논문(실기발표, 졸업시험 등 포함)의 심사에 통과되어 별표2와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②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의 자격증 취득 및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등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2016.6.1.)

제51조의 1(학위취소) 졸업생으로서 제46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2015.4.1.)

제 11 장 학 생 <개정2011.4.1>

제1절 학생활동<신설2011.4.1>

제52조 (학생의 자질) 학생은 본교의 설립정신에 의하여 그 덕성을 기르고 학칙을 준수한다. 전심 성의로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며 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닦아야 한다.

제53조 (학생회 조직) ①학생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교시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대학교 학생회를 둔다.

②학생회에는 총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 총 대의원회와 각 학과 대의원회를 두고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대신대학교 학생회의 회칙은 따로 정한다.

제54조 (학생회간부자격) ①총학생회 간부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본교 입학생으로 4~6학기 등록자 (개정 2017.1.1.)

2.선거 당해연도까지 낙제과목이 없어야 하며 전 학년 학업성적이 B(평균평점3.0)이상인 자

3.형사처벌 및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품행이 단정하고 선행이 남에게 모범이 된 자

②총학생회를 제외한 타 학생회(각 학과 학생회, 총 대의원회, 각 학과 대의원회 등) 간부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①항 각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55조 (학생회 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학생단체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담당 시켜 지도교수는 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 (학생지도위원회) ①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을 두되 중앙지도 위원회와 각 학과 지도 위원회로 구분한다.

②학생회의 제반활동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59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 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0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2.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 4.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61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 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을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지도 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장애학생<신설2011.4.1>

제61조의 2(장애학생)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신설2011.4.1>

제 12 장 포상과 징계

제62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에게 대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63조 (징계) ①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또는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 3.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 4.각종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
 - 5.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는 자
 - 6.학교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
 - 7.기타 학칙에 위배된 자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 ③ 징계 받은 자는 학생회 활동의 직위가 소멸된다.

제 13 장 납 입 금

제64조 (납입금) ①입학(신입·편입·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 등 납입금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1.4.1>

②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휴학(군휴학 포함) 학생은 이미 납입한 등록금에 대하여 복학 시 인정받는다.

제65조 (감면) 입학금, 등록금,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사유로는 감면되지 아니한다.<개정2011.4.1>

제66조 (납입금 반환) 입학금, 등록금, 기타 납입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

다.<개정2011.4.1>

제67조 (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68조 (체납자 조치) 총장은 수업료 체납자에 대하여 출석정지 또는 2개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 휴학을 시킬 수 있다.

제 14 장 장 학 금

제69조 (장학금)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15 장 직 제

제70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 16 장 학칙 제정 및 개정

제71조 (주관부서 등) 학칙 제정 및 개정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학교의 운영상 학칙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제72조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①학칙 제정안 및 개정안은 주관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예고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고 할 때에 함께 공고 한다.

제73조 (심의,공포) 학칙제정안 및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제 17 장 대학평의회

제74조 (대학평의회) 본 대학교에 대학평의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 장 교 수 회

제75조 (구성,소집) ①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4.9.1.)

②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업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5. 교수회 회원 관련된 사항
6. 기타 총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④본 교수회는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케 하며 본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19 장 교무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제76조 (교무위원회) ①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처장, 및 각 대학원장으로 조직하고 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2011.8.1>

③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2.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3.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 4.학교 기획 및 건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5.이사회로부터 수임 받은 학교에 관한 사항
- 6.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

제77조 (각종 위원회) 본 대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 직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0 장 대학자체평가

제78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총장은 본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본 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총장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9조 (평가기구 구성) ①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 1.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처장으로 한다.
- 2.자체평가기획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개정 2010. 7.1.>

②총장은 자체평가의 계획, 실시, 보고서작성,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위하여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둔다.

- 1.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 있는 교수와 행정위원 등 10명 내외로 한다.
- 2.자체평가연구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개정 2010. 7.1.>

③총장은 자체평가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평가팀을 둔다.

1. 평가팀은 행정직원 1명, 팀장 1명을 둔다.
2. 팀장은 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 7.1.>

제80조 (평가결과 공시) 총장은 본 대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21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1조 (부속기관) ①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목회신학원<개정 2010. 7.1.>
3. 생활관
4. 학생생활연구소
5. 교회·선교문제 연구소
6. 교회음악 연구소
7. 어학연구소
8. 학보사
9. 기독교 역사문화연구소<신설2011.4.1>
10. 음악치료연구소<신설2012.7.1>
11. 성지언어연구소<신설2012.7.1>

②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1. 삭제<2010. 7. 1.>
2. 평생교육원

③부속 및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도서관 운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1.)

⑤본 대학교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1.1.)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과된 유아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유아교육과가 폐과됨에 따라 2010학년도 까지 입학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3.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에 입학한 교회음악과 재적생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교회 음악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2조 규정, 제39조 규정 및 제49조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편입생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에 입학한 상담문화영어학부 재학생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상담문화영어학부로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2016.6.1

2017학년도 입학정원

모집계열	학 부(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영어학부 (영어, 상담심리전공)	36명 20명 20명
예능계열	음 악 학 부 기악전공(피아노, 관현악, 플루트) 교회음악전공(성악, 작곡, 오르간) 실용음악전공(워십리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재즈피아노, 실용작곡)	40명
계		116명

<별표 2>

학 사 학 위 의 종 류

계 열	학 부(과)	학위종류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문학사
	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	문학사
	사 회 복 지 학 과	문학사
	관광정보영어학부	문학사
	상담영어학부	문학사
	상담문화영어학부	문학사
	실 용 영 어 과	문학사
사범계열	유 아 교 육 과	문학사
예능계열	교 회 음 악 과	음악학사
	음 악 학 부	음악학사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대신대학교 ○○○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대 신 대 학 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 대신대 ○○○○(학)○○○